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홍지광 의원)

의안 번호	23-101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.

발 의 자 : 고병준, 권영숙, 남해석,
백남환, 안미자, 이한동,
한선미, 홍지광

1. 제정이유

관내 전직대통령 관련 기념시설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의 역사적 인식 함양 및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)

다. 기념사업에 대한 범위(안 제3조)

라. 위탁 대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(안 제4조 ~ 안 제5조)

마. 기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
2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
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8. 22. ~ 8. 28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3조(기념사업의 범위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직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
2. 전직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4조(사무의 위탁) 구청장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·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6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시·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·도자연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【관 계 법 령】

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- 제3조(시책과 권장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 7. 9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320호, 2020. 7. 9., 일부개정]

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
2. 문화예술 관련 공연, 전시, 강좌 등
3.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·전승·보존을 위한 사업
5. 향토 문화자원 조사·연구 및 탐방 활동
6.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
7. 문화예술 행사·축제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
8.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
9.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
10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

②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(위탁시설을 포함한다)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개인·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5조(지원)

제5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·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」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임신정
연 락 처	02-3153-8353